

주거확보급부금 안내

휴업 등에 따른 수입 감소로 인해 주거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원칙상 3개월, 최대 9개월분의 집세 상당액을 지자체에서 집주인에게 지급합니다.



지금까지

실직 및 폐업 후 2년 이내인 분

2020년 4월 20일 이후

실직 및 폐업 후 2년 이내 또는 휴업 등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여 주거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분

4월 30일부터는 더욱 이용하기 쉽게

헬로 워크에 '구' '직' '신' '청' '을' '할' '필' '요' '가' '없' '습' '니' '다'

주거확보급부금 신청 관련 상담은
가까운 자립상담 지원기관에 문의
자립상담 지원기관 일람

<https://www.mhlw.go.jp/content/000614516.pdf>

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이용자는 여기로 →





자주 하는 질문

Q. 휴업 등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여 주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?

A. 본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인하여 근무 일수 및 근무 시간이 감소한 경우 또는 취업 기회가 크게 감소하여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경우를 뜻하며, 아래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.

(예 1) 헬스장이 일부 휴업함에 따라 평소 주 4~5일간의 근무가 주 2~3일 이하로 변경된 헬스장의 트레이너

(예 2) 해외에서 게스트를 초청하여 2주간 개최되는 이벤트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활동 자제로 인해 이벤트가 중지된 프리랜서 통역가

(예 3) 겸업으로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경기 악화로 인해 1개의 사업소가 휴업하면서 근무 일정이 없어진 자

(예 4) 활동 자제로 인해 잇달아 숙박 예약이 취소된 여관업을 경영하는 자

또한, 위 내용은 예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에 유연한 대처를 부탁드립니다.



Q. 실직 및 폐업 후 2년 이내 또는 휴업 등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여 주거를 상실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A. 고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류와 근무 일수 및 근무 시간의 감축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주가 제시한 근무 일정표 등이 있습니다.

개인사업자는 점포의 영업일 및 영업시간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도급 계약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문자의 발주 취소 및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.

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례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아울러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
Q. 현재 프리랜서로 생활 중이나, 일이 급감했습니다. 주거확보급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

A. 가능합니다.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이신 분께서는 본인의 의향 및 상황에 따라 현재의 근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와 더불어 가령, 아르바이트 등 단기 고용을 통해 당분간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현재 하고 계신 일을 그만두지 않으셔도 됩니다.